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1529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11.

판결 선고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가.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D호 22㎡를 인도하고,
나. 5,102,950원과 2024. 7. 20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상은

별지